

# 국립국어원 청소년 공부방 이용 규칙

제정 2016. 11. 9. 국립국어원 예규 제121호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칙은 국립국어원 청소년 공부방의 도서 및 시설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 범위)** 이 규칙은 국립국어원 청소년 공부방(이하 "공부방"이라 한다.)의 도서 및 시설 이용에 관하여 적용한다.

**제3조(이용 대상)** 공부방의 이용 대상은 청소년(초·중·고등학생 또는 해당 연령대의 청소년)으로 한다.

**제4조(이용 시간)** 공부방의 이용 시간은 화~금 16:00~22:00, 토~일 09:00~22:00로 한다.

**제5조(휴관일)** ① 공부방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매주 월요일
  2.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(단, 공휴일과 겹친 일요일은 휴관함)
  3. 그 밖에 국립국어원장이 공부방의 수리 등을 목적으로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날
- ② 국립국어원장은 제1항 제3호에 따른 휴관일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.

**제6조(이용자 등록 등)** ① 공부방의 도서 및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먼저 온 순서대로 현관에 마련된 이용자 등록부에 등록을 한 후 이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.

- ② 공부방의 도서는 원외 대출이 불가능한 것으로 한다.
- ③ 이용자 등록 및 이용증 발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국어원장이 정한다.

**제7조(사용료)** 공부방 시설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.

**제8조(행위의 제한)**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.

1. 공부방 분위기를 저해하는 소란 행위
2. 공부방 도서, 비품 및 시설의 오염·훼손 또는 파손 행위
3. 공부방 내에서 음식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
4. 공부방이 있는 중1층 이외에 국립국어원 청사의 다른 층을 돌아다니는 행위
5. 그 밖에 관리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공부방 본연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행위

**제9조(질서 유지)** ① 국립국어원장은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공부방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공부방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.

② 국립국어원장은 이용자가 제8조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공부방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.

**제10조(변상)** ① 이용자가 공부방의 도서 및 시설을 더럽히거나 찢거나 깨뜨려 못 쓰게 하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.

② 변상은 동일한 것으로 변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실비로 변상할 수도 있다.

**제11조(이용 절차 등)**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공부방 도서 및 시설의 이용 절차와 이용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국어원장이 정한다.

## **부 칙** <2016. 11. 8.>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